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8 선고 2015가단536100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피 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16. 9. 9.

판결 선고 2016. 10. 2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 A 주식회사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,777,779원 및 그 중 86,319,399원에대하여 2015. 8. 3.부터 2016. 2. 5.까지 연 12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,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5. 3. 17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0,760,1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는 원고에게 30,760,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

- 1) 원고는 2013. 6. 12. 피고 A 주식회사(이하 'A')와 보증원금 금85,000,000원, 보증기한 2014. 6. 12.(차후 2015. 6. 12.로 변경)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(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)하였다.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3. 6. 13.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- 2)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- 3)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,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,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(2010. 12. 1.까지는 연 17%, 2010. 12. 2.부터 2015.5. 31.까지는 연 14%, 2015. 6. 1. 이후는 연 12%)에 의한 지연손해금,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,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(가지급금)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- 4) 그 후, 피고 A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5. 3. 13. 이래 이자연체 사태에 빠졌다가, 결국 2015. 5. 11. 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

야기하였다.

5)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. 8. 3. 한국외환은행에게 86,319,399원(원금 85,000,000원 + 이자 1,319,399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
6)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201,900원이고,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56,480원이다.

나. 피고 B의 재산 처분행위 등

1) 피고 B은 2015. 3. 17. 입사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. 3. 23.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2)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5,000,000원의 공동근저당권과 관련하여,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. 3. 24. 괴산신용협동조합에 위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45,000,000원과 이자 124,873원 합계 45,124,873원을 변제하고, 2015. 3. 26. 위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괴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,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1의 가.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

86,777,779원(=대위변제금 86,319,399원+추가보증료 201,900원+법적절차비용 256,480원)

및 그중 대위변제금액 86,319,3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. 8. 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. 2. 5.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요지

원고는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75,885,000원에서
괴산신용협동조합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45,124,873원을 공제한 나머지 30,760,127원 범위
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30,760,127원
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
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
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어느 한
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
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
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
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
된다(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4다28114 판결 등 참조)

2)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C 등을 상대로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3499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
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피고 C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한
사실, 위 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16. 6. 15. "이 사건 매매계약을
30,760,127원(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75,885,000원에서 괴산신용협동조합의
채권액 45,124,873원을 공제한 금액이다)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는 원고에게
30,760,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"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, 위 판결은 2015. 7. 6. 확정되었고, 피고 C는 2016.
8. 16.과 2016. 8. 26. 위 판결금 채무를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와 같이 피고 C가
관련사건의 판결 확정에 따라 그 가액의 회복까지 마친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
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A와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문혜정

부 동 산 목 록

1. 청주시 청원구 D 전 2390㎡
2. 청주시 청원구 E 전 1012㎡
3. 청주시 청원구 F 전 463㎡
4. 청주시 청원구 G 전 327㎡ .끝.

